

2025년 홈쇼핑 입점지원 업체 모집공고

[홈쇼핑을 통한 수산상품 판매 참여업체]

2025년도 온라인 구매시스템 화충사업[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563(2025.02.11)회]에 따라
홈쇼핑 입점지원을 위한 수산상품 판매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□ 공모개요

- 공 고 명 : 2025년 홈쇼핑 입점지원 업체 모집공고
[홈쇼핑을 통한 수산상품판매 참여업체]
- 공모기간 : ‘25. 3. 4(화) ~ 4. 4(금) 18:00
- 지원상품 수 : 18개 이상
- 지원자격 : 홈쇼핑(공영홈쇼핑, 홈앤쇼핑, NS홈쇼핑, 기타홈쇼핑(T-커머스 포함)
등)을 통해 수산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, 생산·제조·가공하는
수협, 영어조합법인, 소기업(소상공인), 사회적기업

▣ 자격기준

- 수 협 :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“조합”
- 영어조합법인 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5항 및 제4조에 따른
어업경영체 등록 법인
- 소 기 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라 업종별 평균매출액 이하인 기업
(식료품 제조업 120억 이하, 어업 80억 이하, 도·소매 50억 이하)
- 소 상 공 인 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기업
(제조업 기준, 그 외 업종 5명 미만)
- 사회적기업 : 「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」: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
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
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동법 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
* 고용노동부(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) 인증서 제출

○ 모집 항목

구 분	비 고
수산 가공품(과세상품)	▪ 불안정한 원물 공급에 따라 연중판매가 가능한 가공상품
대중어종	▪ 신규 아이디어 개발상품 및 지역특산물
어업인이 직접 포획·채취한 1차 수산물	▪ 패류, 해조류 등 ※ 수집상, 총판, 벤더 가능
내수면 양식 수산물 중 판로개척 필요상품	▪ 민물장어, 재첩, 다슬기, 향어, 송어 등
소비침체된 수산물	▪ 외부적 영향으로 소비 침체된 수산물

* 공영홈쇼핑의 경우 신선식품(면세)의 경우 국내산 100%, 수산가공식품(과세)의 경우 주요 수산물
원재료 함량이 국내산 50% 이상일 때[관련: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조] 방송 가능.

□ 지원내용

- 선정 업체당 홈쇼핑사 방송 편성(방송편성비 지원)
- 기본 방송시간 40~60분에 대한 홈쇼핑사 방송수수료 할인 지원
 - 홈쇼핑사 방송수수료 할인

공영홈쇼핑	홈앤쇼핑	기타 홈쇼핑 (T-커머스 포함)
24.2%→8.8% (15.4%p 할인)	31%→20% (11%p 할인)	30~36%→15~20% (15%p 이상 할인)

* 홈쇼핑사 방송수수료, 수협 운영대행수수료 3%, 방송 부대비용(요리비용) 등은 선정업체 자체부담

- 지원제한 : 2024년 선정된 동일 상품 제외

* 2024년 선정된 업체라도 다른 상품으로 제안하는 경우 지원 가능

□ 접수방법

- 신청기한 : '25. 3. 4(화) ~ 4. 4(금) 18:00
- 신청방법 : 이메일 제출(home-sp@suhyup.co.kr)
 -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
- 제출서류 ※ 모든 서류는 파일형태(한글, PPT, PDF)로 제출
 - 1.지원신청서(한글), 2.신상품기술서(PPT) 각 1부(본회 양식)
 - 수협중앙회 홈페이지(www.suhyup.co.kr)에서 다운
 - 3.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-중소기업청발급건, 4.사업자등록증, 5.제조공장 Haccp인증서(해당시), 6.품목제조보고서, 7.사회적기업인증서(해당시), 8.수산물이력제 등록증(해당시) 사본 각각 1부(PDF)
 - 확인서(인증서)는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
 - 사회적기업 :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및 동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

▣ 자격확인

- 벤더와 제조원 동일 : 제조원(벤더)의 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각1부
- 벤더와 제조원 상이 : 제조원의 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각1부, 벤더의 사업자등록증 1부
- 수협, 영어조합법인 : 사업자등록증 1부

□ 평가 및 선정방법

- 본회 「상품선정위원회」 심사를 통한 적격업체 선정
 - 평가점수 60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
 - 수산물이력제 참여업체 등록증 첨부시 가점 10점
 - 사회적기업 인증서(고용노동부 발행)사본 첨부시 가점 3점
 - HACCP 인증서* 첨부시 가점 3점
 - *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 2항에 근거한 인증서만 해당
 - 심사일에 지원업체가 직접 참석하여 상품(샘플) 설명
 - 심사일 및 평가결과는 선정업체별 개별 통보

□ 유의사항

- 다음의 경우, 방송지원 업체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 - 선정된 상품(품목)이 홈쇼핑사 QA 심사결과 불채택 되는 경우
 - 홈쇼핑사 QA : 품질보증 검사실시 (품목제조보고, 시험성적서, 안전관련 서류확인 및 현장점검)
 - 선정된 상품(품목)이 선정업체의 규칙 사유로 인하여 QA를 통과하지 못하거나, 기타사유로 방송편성이 되지 못하는 경우
- 접수 기간까지 일부 서류가 미제출 되거나,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
-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본회가 추가로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
2025. 3. 4

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

문의 : 수협중앙회 판매사업부 홈쇼핑사업팀 (☎ 02-2240-0126, 0127)